

제20장  
최종규정

제20.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0.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당사자들의 기존의 국제 협정과 병존하도록 하려는 그들의 의사를 인정하며 다음을 확인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나. 그 당사자와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각 경우에 따른, 그러한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

2. 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이 그 당사자와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요청에 의하여, 그 다른 협정의 당사자인 관련 당사자들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 항은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sup>1</sup>

---

<sup>1</sup> 이 협정 적용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어떠한 협정이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제 2 항의 의미에서 불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동의한다.

**제20.3조**  
**개정된 또는 후속 국제 협정**

이 협정에 언급되거나 또는 이 협정에 통합된 국제 협정 또는 그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그러한 국제 협정이 다른 국제 협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20.4조**  
**개정**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기탁처에 그들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20.5조**  
**기탁처**

1. 이 협정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을 위한 기탁처로 지정된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기탁처는 이 협정문 원본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 또는 개별 관세 영역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2. 기탁처는 다음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 또는 개별 관세 영역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그 날짜 및 사본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가. 제20.4조(개정) 및 제20.9조(가입)제4항나호에 따른 통보

나. 제20.6조(발효)에 따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다. 제20.7조(탈퇴)제1항에 따른 탈퇴의 통보

라. 제20.9조(가입) 제2항에 따른 이 협정 가입의 요청, 그리고

마. 제20.9조(가입)에 따른 가입서의 기탁

## 제20.6조

### 발효

1. 이 협정은 각 서명국의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서명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이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인 최소 6개의 서명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3개의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그러한 서명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이 협정은 그 밖의 서명국에 대하여 그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20.7조

### 탈퇴

1. 어떠한 당사자도 자국의 탈퇴에 대한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남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된다.

## 제20.8조 일반 검토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당사자들이 당면한 무역 및 투자 문제와 도전에 대한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이 협정을 갱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째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이 협정의 일반 검토를 수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검토를 수행할 때, 당사자들은

가. 당사자들 간의 무역과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나. 다음을 고려한다.

- 1) 제18장(제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부속기구의 업무, 그리고
- 2) 국제 포럼에서의 관련 진전 사항

## 제20.9조 가입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8개월째 되는 날에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sup>2</sup> 그러한 가입은 당사자들의 동의 및 당사자들과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 간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른다.

2.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은 기탁처에 서면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이 협정의 가입을 추구할 수 있다.

---

<sup>2</sup> 이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원교섭국으로서 인도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4.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은 제1항에 따라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다음 중 더 늦은 날에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가. 그러한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을 명시한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나. 모든 당사자들이 그들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5. 이 조에 추가하여, 가입 과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가입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된 단일 원본을 작성하고 2020년 11월 15일에 브루나이다루살람 반다세리베가완,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보고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얀마 네피도,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호주 캔버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서명하였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다토 아민 압둘라**

총리실 장관 겸 재정경제부 II 장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판 소라삭  
상무부 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구스 수파르만토

통상부 장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켄마니 폴세나

산업상무부 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다토' 세리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겸 선임장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웅 툰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몬 엠.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창천성

통상산업부 장관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주린 락사나위섯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란 투안 안  
산업통상부 장관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사이먼 버밍햄**

통상관광투자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산

상무부장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테기 토시미쓰

외무대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

일본국 정부 대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데이미언 피터 오코너

통상수출성장부 장관